개인정보보호법위반

[춘천지방법원, 2018고정191, 2019. 1. 31.]

[전문]

【피 고 인】

피고인 A

【판결선고】

2019. 1. 31.

【주 문】

피고인은 무죄

[이 유]

1. 공소사실

피고인은 홍보 행사도우미 501명이 대화하는 B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 피고인은 2017. 10. 28. 11:4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 채팅방에서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실명과 예명, 휴대전화번호, 피해자의 모습이찍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채팅방에 올려 다른 채팅방 회원들이 보도록 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,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.

2. 판단

가. 인정사실

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.

- (1)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B 단체채팅방은 홍보 행사도우미(이하 '도우미'라 한다)들의 일거리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약 500여명의 프리랜서 도우미들과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이다(이하 '이 사건 채팅방'이라 한다).
- (2) 이 사건 채팅방은 2015년경부터 운영되어 왔는데, 피고인 포함 5인의 운영진들<각주1>은 무보수로 불량 에 이전시 제보공유, 불량 도우미 제보공유 등을 담당하면서<각주2> 다수가 일거리를 구하거나 구인을 위해 활용하는 이 사건 채팅방의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 들어온 2016. 6.경(수사기록 105쪽 및 증인 녹취서 4쪽 참조)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운영진 공지사항으로 올렸다.
 - 2016. 7. 4., 2016. 10. 5 공지글
 - 2017. 5. 31., 2017. 6. 1. 공지글
 - 2017. 10. 20. 공지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채팅방에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무료로 가입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 고인들을 비롯한 운영진에서 위와 같은 규칙을 만든 것은 500명 가량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채팅방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, ③ 이 사건 채팅방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탈퇴시킬 방법은 없었던 점,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은 탈퇴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공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룰에 따라 이 사건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종용하면서 B을 보냈고(중간중간 공지도 했다는 내용도 B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), 이에 피해자는 그러한 룰이 어디 있냐는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'생각할 시간을 달라', '수일 안에 스스로 나가겠다'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채팅방의 룰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피고인은 2017. 10. 25. 처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운영진이 개인톡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였고, 2017. 10. 27.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채팅 방에 피해자가 2017. 10. 27.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의글을 올렸음에도 피고 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아 2017. 10. 28. 11:49경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된 점 등을 종합 해 보면, 🗇 피해자는 이 사건 채팅방 규정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사건 채팅방 활동을 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인이 2017. 10. 28.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그 정보주체인 피해 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 설하거나 정단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①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.

판사 엄상문